

警察執行法の 정비

金 南 辰*

〈目 次〉

- | | |
|------------------|--------------|
| I. 現行法の 問題點과 評價 | III. 警察執行法試案 |
| II. 警察執行法の 構想 | 1. 任務 및 總則 |
| 1. 警察의 職務와 總括的規定 | 2. 警察의 機能 |
| 2. 警察의 權限 | 3. 警察強制 |
| 3. 職務應援(執行共助) | 4. 職務應援 |
| 4. 警察強制 | 5. 損害填補 |
| 5. 損害補填・費用償還 | |

I. 現行法の 問題點과 評價

(1) 우리의 現行法 가운데, 警察執行法の 性格을 가지는 基本法은 警察官職務執行法(1981.4.13 全改. 部分改正 : 1988.12.31, 1989.6.16, 1991.3.8)이다. 만일 이 法律이 警察執行法으로서의 機能을 다 할수 있다면, 또 다른 警察執行法の 構想은 必要없는 것이 된다. 筆者가 나름대로의 警察執行法の 構想을 펴 놓기에 앞서 警察官職務執行法을 分析・評價해 보려는 意圖는 그점에 있다.

우선, 현재 우리 學界에 있어서 同法이 어떠한 性格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가 하는 점부터 考察해 보면, 學說이 거의 一致하여 警察官에 의한 即時強制의 一般

* 高麗大 法大 教授

法으로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秩序行政上の 即時強制手段”을 설명함에 있어, 「一般的으로서 警察官職務執行法이 있고, 그 밖에 각 秩序法規에 개별적인 규정이 있다.」¹⁾

「警察上の 即時強제의 수단은 그에 관한 一般的인 警察官職務執行法과 각 警察법규에 규정하고 있다」²⁾ 등의 설명이 이것을 나타내 준다.

筆者 자신도, 일단 警察官職務執行法이 警察官에 의한 即時強制에 관한 一般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同法에 의한 警察官의 職務行爲의 전부가 即時強制가 아니라 그 밖에 意思作用과 事實行爲(實力行使)가 결합된 의미 合成的 行政行爲, 意思作用만으로서의 行政行爲, 순수 事實行爲(非法的行爲), 直接強制 등 여러 종류의 것이 있으며, 따라서 同法은 여러 종류의 警察官의 典型的 職務行爲에 관한 根據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³⁾

예컨대, 警察官에 의한 수상한 者에 대한 停止命令(제3조 1항), 危險發生防止를 위한 警告, 犯罪豫防을 위한 경고(제6조 1항) 등은 意思作用으로서의 行政行爲로서 볼 수 있으며, 危險發生防止를 위한 抑留·避難措置(제5조 1항), 犯罪의 制止(제6조 1항) 등은 合成的 行政行爲로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凶器 등의 調査(제3조 4항) 迷兒 등의 保護(제4조 1항) 등은 순수 事實行爲로 볼 수 있다. 다음 危險發生의 방지를 위한 여러 措置(제5조), 危險防止를 위한 家宅등 出入(제7조), 武器의 사용(제11조) 등은 代執行 내지 直接強制 또는 急迫한 경우에 있어 事實의 戒告 등 行政行爲를 거침이 없이 代執行 또는 直接強制에 상당하는 행위를 취할 수 있는 의미의 即時強制⁴⁾의 성질을 가진

1) 金道稔, 新稿 一般行政法論(下), 252

2) 李尚圭, 新行政法論(下), 303면.

3) 金南辰, 行政法 II, 241면; 同人, 直接強制·直接執行·即時強制, 月刊考試, 1987.4; 即時強制理論의 再構成, 考試界, 1988.4 등 참조.

4) 筆者는 현재 代執行 및 直接強制를 戒告없이 하는 경우를 即時強制(即時執行)로 보는 점에서 독일의 實定法 및 學說에서 말해지고 있는 即時執行(sofortige Vollziehung)과 概念을 같이 하는 셈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通用되고 있는 即時強制概念보다 좁은 概念의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된다. 詳細는 註 3)의 筆者의 글 참조.

다고 할 수 있다.

(2) 한편, 警察官職務執行法 제2조는 「警察官은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라는 규정을 앞 세워, ① 犯罪의 豫防·鎮壓 및 搜查, ② 警備·要人警護 및 對間諜作戰修行, ③ 治安情報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 交通의 團束과 危害의 방지, ⑤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열거하고 있는 바, 同條를 警察權發動의 授權規定으로 볼 수 있으나 하는 것이 懸案의 문제로 되어 있다.

우리의 警察關係의 法制 및 理論이 독일로부터 傳來하였음은 是認해도 좋을 것이다. 그 독일에 있어서는 警察權發動의 授權(Ermächtigung) 또는 權限에 관한 根據規定]을 概括條項(Generalklausel)과 個別條項(Spezialklausel)으로 나누는 것이 오랜 傳統이다. 여기에서 個別條項이란 예컨대 檢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個別·具體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概括條項이라고 함은 「警察(官)은 公共의 安寧·秩序에 대한 危險의 防止를 職務로 한다」라는 類의 규정을 근거로 警察權을 발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傳統은 독일의 경우, 1974년의 프로이센 一般國法(제10조 2항 17호)에서 시작하여 1931년의 프로이센 警察行政法(제14조)을 거쳐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⁵⁾

그 概括條項은 “公共의 安寧·秩序에 대한 危險防止”라고 하는 一見 막연하고 包括的인 要件下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하고 있음으로써 경찰권의 발동이 남용될 素地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概括條項은 어디까지나 第2次的·補充的受權規定이며, 同條項에 입각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적용될 法理(우리나라에서 말해지고 있는 警察權의 條理上的 限界)가 충분히 발전되어 있으며, 또한 그러한 법리를 통한 司法的 統制가 행해지고 있는 까닭에 概括條項으로 인한 警察權濫用의 우려는 殆無하다는 것이 그들의 主張이다. 아울러, 警察의 任務는 危險防止(Gefahrenabwehr)에 있는 바, 그 危險을 미리미리 豫測하여 그에 대비한 警察措置를 상세히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에, 上述한 바와 같은 概括條

5) 詳細는 Vgl. Drews/Wacke/Vgel/Martens, Gefahrenabwehr, 1985, S. 129ff; Friauf, Polizei und Ordnungsrecht, in: von Münch(H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992., S.23ff.

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들의 主張이다.⁶⁾ 그러면서도 오늘날에는 독일의 경우, 그 職務(Aufgabe)에 관한 규정과 授權 또는 權限(Befugnis)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概括條項에 관련된 法理까지 明文化하고 있는 것이 그 나라에 있어서의 現況이다.(後術 참조).

우리나라의 警察法文獻에서 빠짐없이 설명되고 있는 “警察權의 條理上的 限界”는 독일法에 있어서의 概括條項의 解釋法理에 相當한다. 換言하면, 우리나라의 文獻은 독일法에서의 概括條項의 存在를 暗默的으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實定法 가운데 그 概括條項에 상응하는 것으로서는 警察官職務執行法 제2조(특히 제5호) 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筆者의 견해이다.⁷⁾ 筆者의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學界에 있어서 支持⁸⁾와 批判⁹⁾을 아울러 받고 있는 바, 判例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점에서 鼓舞를 받고 있다. 즉, 警察官(請願警察)이 許可없이 倉庫를 住宅으로 改築하는 것을 團束하는 것에 대한 反抗이 公務執行妨害罪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裁判上 문제된 事件¹⁰⁾에 있어서 대법원은 警察官職務執行法 제2조를 受容하여 당해 警察官의 團束行爲를 適法視 하였던바, 이것은 法院이 同條를 警察權 發動의 授權條項(概括的 授權條項)으로 본 것이 된다.¹¹⁾ 그러니 결국 警察官職務執行法은 우리의 現行法 가운데 警察權 發動에 관한 個別的 授權條項을 설치하고 있는 동시에, 警察官이 그의 職務遂行을 위해 필요한 여러 종류의 措置(處分·事實行爲·警察強制)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內容이 너무나 貧弱하고 非體系의이라고 할 수 있다.

6) 註 5)의 文獻 참조.

7) 金南辰, 行政法 II 200면.

8) 慎保晟, 現代行政法の 理論, 1988, 330면.

9) 李尙圭, 上揭書, 265면. 「전통적인 侵害留保說은 들을 것도 없이, 法治行政主義의 內容의 하나인 法律留保의 本領이 된 것은 警察作用의 분야이었음을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일인 바, 警察權은 개별적인 作用法에 의한 구제적인 法的 授權을 필요로 하는 것임은 法治主義의 정연한 요구라고 하겠다」라는 것이 上記 批判論의 論據이다.

10) 大判 1986.1.28, 85도 2448.

11) 다만, 筆者는 本判例와 관련하여 法院이 警察官職務執行法 제2조 警察權發動의 授權規定으로 보는 것에 대한 解釋論的 根據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을 批評한 바 있다.

拙稿, 警察權發動의 概括的 授權條項(判例評釋), 法律新聞, 1988.11.17, 11면.

여기에 바로 새로운 警察執行法の 제정이 切實한 이유가 있다. 그와 같은 前提에서, 다음에 警察作用에 관한 基本法을 제정하는 경우에 최소한도로 답을 필요가 있다는 內容에 관해 記述해 보고자 한다.

II 警察執行法の 構想

1. 警察의 職務와 總括的 規定

(1) 警察의 職務

① 「警察은 公共의 安寧과 秩序에 대한 危害(또는 危險)를 防止함을 職務로 한다」라는 規定을 明定한다.¹²⁾

② 警察의 私權의 保護(民事關係를 위한 介入)은, 警察의 介入이 없게 되면 私權의 保護가 심히 어렵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規定을 明定한다.¹³⁾ 이것은 우리의 警察法文獻에 있어서 警察公共의 原則에 要素로서 說明되고 있는 “民仕關係不關與原則”을 成文化하는 의미를 가진다.

③ 「그 밖에 警察은 他法令에 의하여 委任된 사무를 처리한다」라는 規定을 明定한다. 現行의 警察官職務執行法은 「犯罪의 豫防·鎮壓 및 搜查」, 「交通의 團束」 등을 職務의 範圍로서 열거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이 他法令(刑事訴訟法, 道路交通法 등)에 의하여 警察에 委任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他法令에 의해 경찰에 委任된 직무를 망라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法律에서는

12) 現行의 警察官職務執行法은 제2조에서 警察官의 職務를 열거하고 있는 바, 同條例가 단순한 任務規定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職務가 제5호에 規定되어 있는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에 대한 例示규정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의 立法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本稿에서의 筆者의 構想은 職務規定과 授權(權限)規定을 구분하여, 警察의 職務를 원칙으로 公共의 安寧과 秩序에 대한 危害防止에 국한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혀 두기로 한다.

13) 독일의 模範答案(Musterentwurf)에서는 「法院의 保護(gerichtlicher Schutz)를 同時に 얻을 수 없는 경우」를 警察의 民事關係關與의 與件으로서 規定하고 있는 바(同 제1조 2항) 현실적으로 큰 意味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여기에 바로 새로운 警察執行法の 제정이 切實한 이유가 있다. 그와 같은 前提에서, 다음에 警察作用에 관한 基本法을 제정하는 경우에 최소한도로 답을 필요가 있다는 內容에 관해 記述해 보고자 한다.

II 警察執行法の 構想

1. 警察의 職務와 總括的 規定

(1) 警察의 職務

① 「警察은 公共의 安寧과 秩序에 대한 危害(또는 危險)를 防止함을 職務로 한다」라는 規定을 明定한다.¹²⁾

② 警察의 私權의 保護(民事關係를 위한 介入)은, 警察의 介入이 없게 되면 私權의 保護가 심히 어렵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規定을 明定한다.¹³⁾ 이것은 우리의 警察法文獻에 있어서 警察公共의 原則에 要素로서 說明되고 있는 “民仕關係不關與原則”을 成文化하는 의미를 가진다.

③ 「그 밖에 警察은 他法令에 의하여 委任된 사무를 처리한다」라는 規定을 明定한다. 現行의 警察官職務執行法은 「犯罪의 豫防·鎮壓 및 搜查」, 「交通의 團束」 등을 職務의 範圍로서 열거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이 他法令(刑事訴訟法, 道路交通法 등)에 의하여 警察에 委任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他法令에 의해 경찰에 委任된 직무를 망라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法律에서는

12) 現行의 警察官職務執行法은 제2조에서 警察官의 職務를 열거하고 있는 바, 同條例가 단순한 任務規定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職務가 제5호에 規定되어 있는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에 대한 例示규정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의 立法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本稿에서의 筆者의 構想은 職務規定과 授權(權限)規定을 구분하여, 警察의 職務를 원칙으로 公共의 安寧과 秩序에 대한 危害防止에 국한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혀 두기로 한다.

13) 독일의 模範答案(Musterentwurf)에서는 「法院의 保護(gerichtlicher Schutz)를 同時に 얻을 수 없는 경우」를 警察의 民事關係關與의 與件으로서 規定하고 있는 바(同 제1조 2항) 현실적으로 큰 意味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抽象적인 규정을 두고, 그외의 詳說은 解說書 등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 된다.

(2) 他機關과의 관계

「他機關의 權限으로 되어 있는 公害防止의 職務가 適時에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警察이 이에 介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明定한다. 이것은 實質的 의미의 警察이 他機關(예컨대 保健行政機關, 環境行政機關 등)의 權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主務機關이 미처 危害防止를 위한 措置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있어서의 形式的 의미의 警察이 그에 介入할 수 있음을 成文化하는 의미를 가진다.

(3) 過剩禁止原則(廣義의 比例原則)

警察은 여러가지 적합한 措置 가운데, 個人 및 公衆에 대해 가장 적은 被害를 주는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의도했던 效果보다 더 큰 不利益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警察措置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明文化한다. 위와 같은 法原則은 學說上 過剩의 禁止(Übermaßverbot) 또는 廣義의 比例原則(Grundsatz der Verhältnisäßigkeit)으로 불리우고 있는 내용이다.¹⁴⁾ 現行의 警察官職務執行法이 유사한 내용을 「이 法에 의한 警察官의 職權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4) 行爲責任(사람의 行爲에 대한 責任)

우리나라에서 “行爲責任의 原則”은 警察權發動에 관한 條理上의 原則의 하나로써 설명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同 原則을 成文化함이 바람직하다. 文案은 「① 警察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 危害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또는 명령을 발하여 危害를 防止·除去시킬 수 있다). ② 14세 미만의 자 또는 心身의 장애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가 危害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14) 同 法原則의 詳細에 관하여는 過剩措置禁止의 原則, 月刊考試, 1987.1. 참조.

의 保護者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③ 경찰은 危害를 발생시키는 일을 使役시키는 자에 대해서도 危害防止를 위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지도록 한다.

(5) 狀態責任(物體의 狀態에 대한 責任)

行政責任과 함께 警察責任의 原則의 내용이 되고 있는 狀態責任(Verantwortlichkeit für den Zustand von Sachen)에 관해서도 成文化함이 바람직하다. 文案은 「① 어떤 物體의 危害를 造成하고 있는 경우에는 警察은 그 物體의 占有者의 대하여 危害除去를 위한 命命을 발할 수 있다. ② 警察은 上記 物體의 所有權者에 대해서도 危害防止를 위한 措置를 취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지도록 한다.

(6) 危害防止措置의 直接施行

警察上의 危害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에 行爲責任者 내지는 狀態責任者에 대한 措置로써 그 危害가 방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警察은 그러한 方法(責任者에 대한 措置)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如意치 않는 경우에는 警察 스스로 위해방지를 위한 措置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러한 경우의 措置를 學術上 「措置의 直接施行」(unmittelbare Ausführung einer Maßnahme)이라고 한다.¹⁵⁾ 文案은 「① 警察은 行爲責任者 및 狀態責任者에 대한 措置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危害防止措置를 할 수 있다. ② 警察이 취한 措置를 위해 費用을 支出한 경우에는, 그 費用을 責任者로부터 求償할 수 있다.」

「費用의 徵收는 國稅基本法上的의 滯納基本法上的의 滯納處分節次에 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지도록 한다.¹⁶⁾

(7) 警察上의 危害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責任者에 대한 措置, 措置의 直接

15) 詳細는 金南辰, 月刊考試, 1987.4. 참조.

16) 警察費用의 責任者로부터의 償還(求償)에 관여하는, 金南辰, 警察上의 損害補填·費用償還, 月刊考試, 1988.1. 참조

施行을 통해서 危害를 防止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非責任者인 第3者의 힘을 빌리게 되면 事態를 수습할 수 있는 경우, 그 非責任者에 대한 要求(경찰권의 발동)를 일정한 要件下에 許容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를 警察上의 非常事態(Notstand)¹⁷⁾ 라고 하기도 한다.

그 警察上의 非常事態 중 非常責任者에 대한 警察權이 어떠한 要件下에 인정될 수 있는가 등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學者간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警察非常事態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此際에 그에 관해서도 成文化함이 바람직하다.

現行 警察官職務執行法도 「그 場所에 있는 者」에게 危害防止上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제5호 제1항 3호)을 통해 非責任者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要件이 상세하지 않으며, 補償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보다 詳細和할 필요가 있다.

2. 警察의 權限

(1) 概 說

앞에서 警察의 職務條項에 관하여 記述하였거니와 이 곳에서는 그 職務(Aufgabe)를 수행하기 위한 權限(Befugnis)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現行의 警察官職務執行法 역시 警察官의 職務에 관하여 概括的으로 규정하고 있거니와(제2조), 同 條項은 단순한 職務規定을 분리하며, 個別的 授權規定과 아울러 2次的·補充的 授權條項으로서의 概括的 授權規定을 아울러 설치하는 방법이다.

本稿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먼저 概括的 授權規定에 관해서 규정하고, 이것과는 별도로 표준적 業務行爲로서의 個別的 職務規定을 설치하는 構想을 펴 보기로 한다.

17) 詳細는 金南辰, 警察責任과 警察非常事態, 考試界, 1979. 10.

施行을 통해서 危害를 防止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非責任者인 第3者의 힘을 빌리게 되면 事態를 수습할 수 있는 경우, 그 非責任者에 대한 要求(경찰권의 발동)를 일정한 要件下에 許容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를 警察上의 非常事態(Notstand)¹⁷⁾ 라고 하기도 한다.

그 警察上의 非常事態 중 非常責任者에 대한 警察權이 어떠한 要件下에 인정될 수 있는가 등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學者간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警察非常事態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此際에 그에 관해서도 成文化함이 바람직하다.

現行 警察官職務執行法도 「그 場所에 있는 者」에게 危害防止上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제5호 제1항 3호)을 통해 非責任者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要件이 상세하지 않으며, 補償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보다 詳細和할 필요가 있다.

2. 警察의 權限

(1) 概 說

앞에서 警察의 職務條項에 관하여 記述하였거니와 이 곳에서는 그 職務(Aufgabe)를 수행하기 위한 權限(Befugnis)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現行의 警察官職務執行法 역시 警察官의 職務에 관하여 概括的으로 규정하고 있거니와(제2조), 同 條項은 단순한 職務規定을 분리하며, 個別的 授權規定과 아울러 2次的·補充的 授權條項으로서의 概括的 授權規定을 아울러 설치하는 방법이다.

本稿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먼저 概括的 授權規定에 관해서 규정하고, 이것과는 별도로 표준적 業務行爲로서의 個別的 職務規定을 설치하는 構想을 펴 보기로 한다.

17) 詳細는 金南辰, 警察責任과 警察非常事態, 考試界, 1979. 10.

(2) 概括的 授權規定

警察이 危險 또는 危害라고 하는 사전에 충분히 豫見하며 補足할 수 없는 事態를 수습하고 방지할 職務를 지니고 있으므로, 要件과 效果를 구체화해 놓는 個別的 授權條項외에, 概括的 授權條項을 마련해 두는 것이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超法的 내지는 脫法的 措置를 취하는 것 보다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概括(一般)的 授權條項을 成文化하는 것을 찬성하기로 한다.

本案에 있어서는, 「① 警察은 이 법이 달리 規定하고 있지 않는 한, 公共의 安寧, 秩序에 대한 現存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② 警察은 他法令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本法이 정한 權限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지도록 한다.

(3) 身分의 確認등

警察의 典型的 職務行爲의 첫번째로서 내세울만한 것이 身分의 確認이다. 現行의 警察官職務執行法은 이에 관련된 措置를 “不審檢問”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바, 그러한 降壓的 表現보다는 “身分確認”등 보다 부드러운 表現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身分確認의 要件에 있어서는 現行 職務執行法上的 그것이 그대로 채택되어도 좋을 것이다. 즉, 「수상한 舉動 기타 주위의 사정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身分의 確認을 할 수 있게 함이 妥當視된다.

둘째, 身分확인 手段·방법으로서 停止命令·質問·調査(몸 수색) 외에도 사진촬영, 指紋檢査, 測量 등이 있을 수 있다.

現行의 職務執行法에는 사진촬영, 指紋檢査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바, 그러한 手段은 필요없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그에 관한 根據規定을 두는 동시에, 그러한 調査措置와 個人의 프라이버시(私生活) 保護 등 基本權保障간이 調和가 이루어지도록 各별한 注意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¹⁸⁾

18) 독일의 模範答案에는 身分의 確認 등 警察調査와 관련하여 私生活保護라는 視角에서 그 내용을 補完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Vgl. Knemeyer, Datenerhebung und Datenverarbeitung in Polizeirecht, NVwZ 1988. S. 195ff ; Kniesel/Tegtmeier/Vahle, Handbuch der Datenschutzs für Sicherheitsbehörden, 1986.

(4) 召喚과 證人訊問

公共의 安寧·秩序에 대한 危害의 防止라고 하는 警察의 職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召喚과 證人訊問에 대한 권한을 警察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特定人 本人의 身分確認이 필요한 경우는 本人을,¹⁹⁾ 또는 特定人의 身分確認에 필요한 事實을 第三者가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第三者를 召喚할 수 있는 根據규정을 설치한다.

둘째로, 本人 또는 第三者가 任意召喚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強制召喚할 수 있는 根據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이 경우에는 適法節次를 갖추어야 함이 중요하다. 즉, 刑事訴訟法이 정한 召喚(제68조 이하) 및 證人訊問(146조 이하)에 관한 規定의 準用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關係人의 召喚時에는 關係人에 대하여 召喚의 이유를 상세히 알리며, 되도록 生業에 지장이 없는 時間을 택하여야 한다는 注意規定을 설치해 둘 必要가 있다.

(5) 保護措置등

現行의 職務執行法에는 精神錯亂者, 迷兒, 酒醉者, 自殺試圖者 또는 負傷者로서 긴급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의 保護措置 등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 바(제4조) 그러한 내용은 앞으로 존속시킬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6) 危險發生의 방지

現行의 職務執行法은 人命 또는 新體에 危害를 미치거나 財産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天災·事變·工作物의 파괴·교통사고·위험물 의 폭발 등 위험한 사태가 일어난 때에 있어서의 危險發生의 防止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 바(제5조), 그와 같은 내용 의 規定은 앞으로도 존속시킬 必要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 이 경우 위에서 본 “身分確認”에 필요한 要件을 充足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7) 犯罪의 豫防과 制止

現行의 職務執行法은 犯罪行爲가 目前에 行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豫防하기 위하여 關係人에게 필요한 警告를 발하는 등 “犯罪의 豫防과 制止”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같은 類의 規定은 앞으로도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危險防止를 위한 出入

現行의 職務執行法上の 危害防止를 위한 家宅 등 出入에 관한 규정(제7조)은 앞으로도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 事實의 確認등

現行의 職務執行法은, 직무수행자에 관련된 事實의 照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제8조), 유사한 규정은 앞으로도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上述한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措置가 필요함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²⁰⁾

(10) 司法的 措置

이상에서 열거한 警察의 諸措置 가운데, 人身에 대한 拘留, 物件의 領置, 住宅 등의 出入에 관해서는 그의 計容性, 期間 등에 관하여 法官의 決定을 얻도록 한다. 西獨의 경우, 위와 같은 事例의 경우, 法官의 決定(Enschcheidung des Richters)을 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詳細는 별도의 法律²¹⁾에서 규정케 하고 있는 바(模範答案 제14조),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제도를 받아들임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職務應援(執行共助)

警察은 警察力을 통해 實力을 행사할 수 있는 人力과 장비를 갖추고 이는 점

20) 詳細는 註 24)의 文獻 참조.

21) 同法의 명칭은 「人身의 自由박탈에 관한 司法的 節次에 관한 法律(Gesetz über das gerichtliche Verfahren bei Freiheitsentziehungen)로 되어 있다.」

(7) 犯罪의 豫防과 制止

現行의 職務執行法은 犯罪行爲가 目前에 行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豫防하기 위하여 關係人에게 필요한 警告를 發하는 등 “犯罪의 豫防과 制止”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는 바, 같은 類의 規定은 앞으로도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危險防止를 위한 出入

現行의 職務執行法上의 危害防止를 위한 家宅 등 出入에 관한 規定(제7조)은 앞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 事實의 確認등

現行의 職務執行法은, 직무수행자에 관련된 事實의 照會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 바(제8조), 유사한 規定은 앞으로도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上述한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各별한 배려와 措置가 必要함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²⁰⁾

(10) 司法的 措置

이상에서 열거한 警察의 諸措置 가운데, 人身에 대한 拘留, 物件의 領置, 住宅 등의 出入에 관해서는 그의 計容性, 期間 등에 관하여 法官의 決定을 얻도록 한다. 西獨의 경우, 위와 같은 事例의 경우, 法官의 決定(Enschcheidung des Richters)을 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詳細는 별도의 法律²¹⁾에서 규정케 하고 있는 바(模範答案 第14조),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제도를 받아들임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職務應援(執行共助)

警察은 警察力을 통해 實力을 행사할 수 있는 人力과 장비를 갖추고 이는 점

20) 詳細는 註 24)의 文獻 참조.

21) 同法의 명칭은 「人身의 自由박탈에 관한 司法的 節次에 관한 法律(Gesetz über das gerichtliche Verfahren bei Freiheitsentziehungen)로 되어 있다.」

이 하나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他國家的 機關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直接強制라고 하는 實力行使를 필요로 하는데, 당해 機關의 필요한 人力 등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 警察에 助力을 구할 수 있는 根據 및 節次규정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職務應援의 요청을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긴급한 경우에는 口頭에 의한 요청도 가능케 한다. 舊 事後의 文書化에 대한 규정을 둔다.

職務應援과 관련하여 警察은 手段·方法에 대한 責任을 지는 것으로 한다. 또한 職務應援에 수반하여 人身의 自由박탈이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司法的 決定에 관한 關係規定을 準用케 하여야 할 것이다.

4. 警察強制

(1) 警察制度의 許容性

우리의 現行法 가운데, 行政強制에 관한 一般的으로서는 行政代執行法과 國稅徵收法이 있다. 따라서 獨法系에서 인정되고 있는 直接強制 및 強制金(執行罰)의 제도는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非對替的 義務를 강제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그 결과 行政의 實効性確保가 어려운 일이 생길 뿐 아니라 脫法的方法이 자행되는 일 또한 없지 않다.²²⁾ 따라서 行政強制에 관한 法의 整備·體系化가 요구되고 있는 바, 우선 警察法 분야에서도 立法의 整備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²³⁾

한편, 即時強制는 強制執行(代執行·直接強制)중 戒告의 節次를 省略하고 행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前述) 그 即時強制에 대해서는 아울러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22) 예컨대, 土地收用法은 行政強制의 수단으로서 代執行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제77조), 土地의 引渡 등은 非對替的 行爲로서 代執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詳細는 拙著, 行政法 I. 307면 참조.

23) 警察은 그의 固有業務라 할 수 있는 危險의 防止를 위해 行政強制를 필요로 할 뿐 아닐, 他行政機關과 직무의 성격도 다르므로, 警察強制에 관해서는 독자적으로 規準함이 바람직하다. 西獨같은 나라에서 一般法으로서의 行政執行(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이 있는 외에, 警察強制에 관해서는 警察(行政)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 하나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他國家的 機關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直接強制라고 하는 實力行使를 필요로 하는데, 당해 機關의 필요한 人力 등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 警察에 助力을 구할 수 있는 根據 및 節次규정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職務應援의 요청을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긴급한 경우에는 口頭에 의한 요청도 가능케 한다. 舊 事後의 文書化에 대한 규정을 둔다.

職務應援과 관련하여 警察은 手段·方法에 대한 責任을 지는 것으로 한다. 또한 職務應援에 수반하여 人身의 自由박탈이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司法的 決定에 관한 關係規定을 準用케 하여야 할 것이다.

4. 警察強制

(1) 警察制度의 許容性

우리의 現行法 가운데, 行政強制에 관한 一般的으로서는 行政代執行法과 國稅徵收法이 있다. 따라서 獨法系에서 인정되고 있는 直接強制 및 強制金(執行罰)의 제도는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非對替的 義務를 강제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그 결과 行政의 實効性確保가 어려운 일이 생길 뿐 아니라 脫法的方法이 자행되는 일 또한 없지 않다.²²⁾ 따라서 行政強制에 관한 法의 整備·體系化가 요구되고 있는 바, 우선 警察法 분야에서도 立法의 整備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²³⁾

한편, 即時強制는 強制執行(代執行·直接強制)중 戒告의 節次를 省略하고 행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前述) 그 即時強制에 대해서는 아울러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22) 예컨대, 土地收用法은 行政強制의 수단으로서 代執行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제77조), 土地의 引渡 등은 非對替的 行爲로서 代執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詳細는 拙著, 行政法 I. 307면 참조.

23) 警察은 그의 固有業務라 할 수 있는 危險의 防止를 위해 行政強制를 필요로 할 뿐 아닐, 他行政機關과 직무의 성격도 다르므로, 警察強制에 관해서는 독자적으로 規準함이 바람직하다. 西獨같은 나라에서 一般法으로서의 行政執行(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이 있는 외에, 警察強制에 관해서는 警察(行政)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라고 하겠다.

결국 行政行爲(處分) 즉, 戒告를 통해서 의무(作爲·不作為·중촌 등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해지는 強制執行²⁴⁾ 과 일정한 경우 戒告를 생략되어지는 即時強制的 法的 根據를 明記할 필요가 있다.

한편 西獨의 경우 行政機關에 의한 義務代행을 直接強制로 하는 경우에는 代執行과는 달리 그 費用을 行政權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Vgl. Maru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6, Aufl., 1988. S. 397f)

(2) 警察強制的 手段

理論上 行政上 強制執行에는 ①代執行, ②強制金, ③直接강제, ④強制徵收의 네가지가 있는 바, 警察強制로서는 그 중에서 앞의三者에 준용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警察強制는 刑事處罰 등과 併料할 수 있음을 밝혀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代執行

他人이 대신할 수 있는 作爲義務가 不履行이 있는 경우에 警察機關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第三者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소요된 費用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強制手段의 代執行(Ersatzvornahme)이다.

위의 代執行은 行政代執行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오래이다. 따라서 司法의 核心的 內容을 警察法에 옮기거나, 아니면 司法을 準用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위의 代執行의 내용 가운데, 警察機關에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하는 것을 直接強制的 一態樣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代執行의 一態樣으로 그대로 둘 것인가는 앞으로 좀 더 檢討해 볼 사항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²⁵⁾

24) 독일에서 그 強制執行은 行政行爲가 不可爭(unanfechtbar)으로 된 이후에 行해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제도를 취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5) 독일 聯邦의 行政執行法 또는 州의 聯邦法規 가운데에는, 行政機關에 의한 義務者의 義務代행을 直接強制的 一態樣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聯邦의 行政執行法 제10조 및 제12조 등 참조).

(4) 強制金(執行罰)

強制金(Zwangsgeld)은 代執行 불가능한 作爲義務, 不作爲義務 또는 受認義務를 강제하기 위한 手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文獻에서 “執行罰”이라는 用語를 사용하고 있는 바, 行政處罰의 수단이 아니고 強制執行의 수단이므로 罰이라는 명칭은 回避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執行罰은 獨逸語의 Exekustrafe에서 由來하는 바, 同 用語가 독일에서 Zwangsgeld로 代替된 것은 1931년의 프로이센 警察行政法(Preußisches Polizeiverwaltungsgesetz)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⁶⁾

強制金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일정액의 금액을 되풀이 부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과거의 非行에 대한 罰(Strafe)이나 強制(Sanktion)가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Beugemittel)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독일에서는 代替불가능한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²⁷⁾

(5) 代替拘留

독일의 경우, 強制執行手段으로서의 強制金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代替하여 1일 내지 14일간의 拘留에 處할 수 있게 하고 있다(Ersatzzwangshaft). 그 執行은 警察의 요청에 따라 司法行政機關(Justizverwaltung)이 民事訴訟法(제 904~910)이 정한 바에 따라 執行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聯邦 行政執行法 제16조, 模範答案 제32조 참조).

強制金제도를 도입하는 한, 그 代替拘留制度의 채택도 考慮해 볼만한 문제이다.

(6) 直接強制

直接強制(unmittelbarer Zwang)는 行政機關(警察官)이 의무자의 身體나 財產에 實力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케 하거나 혹은 직접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그에 관한 一般法 내지는 一般的規定이 없으

26) Vgl. Forsthoff, Lehrbuch des Verwaltungsrechts, 10 Aufl., 1973. S. 298.

27) Vgl. Forsthoff, aaO., S. 200.

며, 個別法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道路交通法 67조 2항, 公衆衛生法 23조 등). 그러나 警察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直接強制的 必要가 많은 것이므로 警察法에서나마 그에 관한 一般的 規定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立法化에 있어서는 그의 要件·節次·手段에 관해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긴급한 경우에 事前의 戒告(警告)없이 即時로 행할 수 있는 경우(即時強制 또는 即時執行)에 관해서도 明記해 둘 필요가 있다.

現行的 警察官職務執行法에도 “무기의 사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學說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即時強制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立法例에서는 武器의 使用(Schußwaffengebrauch)은 直接強制的 手段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模範答案 제42조), 사정이 急迫하여 사전의 警告없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即時強制(即時執行)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職務執行法上の 경우를 即時強制(即時執行)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職務執行法上の 武器使用에 있어서도, 사전에 “투항하라”등 내용의 警告를 한 다음엔 武器를 사용하는 것이 通例일 것이므로 實際에 있어서는 그 武器使用이 即時強制가 아니라 直接強制的 수단으로서 使用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앞으로의 立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直接強制에는 武器使用만이 아니라 警察이 警察力과 그의 補助手段(警察犬, 警察馬, 물, 자동차 등 기계적 수단, 火藥類)을 통해서 의무자의 신체나 財産에 직접 實力을 가하는 一切의 작용이 이에 포함된다. 사람의 拘留(Fesselung von Pershonen)도 그에 포함된다. 이러한 直接強制는 強制執行 중에서도 가장 強力한 수단이며 따라서 人權侵害의 우려가 많으므로, 그의 要件·節次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²⁸⁾

5. 損害補填·費用償還

(5) 概 說

警察力을 행사하다 보면, 故意·過失로 他人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

28) 독일의 模範草案이 直接強制에 관하여만 13個條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參考가 된다고 하겠다(同法案 제33조-44조).

며, 個別法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道路交通法 67조 2항, 公衆衛生法 23조 등). 그러나 警察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直接強制的 必要가 많은 것이므로 警察法에서나마 그에 관한 一般的 規定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立法化에 있어서는 그의 要件·節次·手段에 관해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긴급한 경우에 事前의 戒告(警告)없이 即時로 행할 수 있는 경우(即時強制 또는 即時執行)에 관해서도 明記해 둘 필요가 있다.

現行的 警察官職務執行法에도 “무기의 사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學說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即時強制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立法例에서는 武器의 使用(Schußwaffengebrauch)은 直接強制的 手段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模範答案 제42조), 사정이 急迫하여 사전의 警告없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即時強制(即時執行)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職務執行法上的 경우를 即時強制(即時執行)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職務執行法上的 武器使用에 있어서도, 사전에 “투항하라”등 내용의 警告를 한 다음엔 武器를 사용하는 것이 通例일 것이므로 實際에 있어서는 그 武器使用이 即時強制가 아니라 直接強制的 수단으로서 使用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앞으로의 立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直接強制에는 武器使用만이 아니라 警察이 警察力과 그의 補助手段(警察犬, 警察馬, 물, 자동차 등 기계적 수단, 火藥類)을 통해서 의무자의 신체나 財産에 직접 實力을 가하는 一切의 작용이 이에 포함된다. 사람의 拘留(Fesselung von Pershonen)도 그에 포함된다. 이러한 直接強制는 強制執行 중에서도 가장 強力한 수단이며 따라서 人權侵害의 우려가 많으므로, 그의 要件·節次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²⁸⁾

5. 損害補填·費用償還

(5) 概 說

警察力을 행사하다 보면, 故意·過失로 他人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

28) 독일의 模範草案이 直接強制에 관하여만 13個條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參考가 된다고 하겠다(同法案 제33조-44조).

는가 하면, 無過失로 他人에게 손해를 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損害賠償의 법리 또는 規定(國家賠償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警察緊急事態에 있어서 警察責任者가 아닌 第3者에게 命하여 危害防止라고 하는 警察目的을 달성한 경우에는 損失報償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實定法上으로는 그에 관한 규정이 全無한 상태이므로 이 문제를 立法을 통해 早速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편, 警察義務者가 행할 일을 警察이 대신하였다든가, 直接施行을 위해 소요된 費用을 의무자에 대하여 求償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2) 警察上의 損害賠償

警察官의 職務上 不法行爲나 補助行爲나 補助手段(公物)의 하자로 인하여 他人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警察官의 使用者인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警察上의 損害賠償에 관해서는 現行의 國家賠償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現行法은 公務員의 不法行爲와 관련하여 過失責任主義를 택하고 있는 바, 無過失責任主義로서 轉換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損失補償

이미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適法한 경찰권의 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失補償의 문제는 時急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財產權”의 침해만이 아니라 “人身의 침해에 대한 補償의 문제도 아울러 考慮할 필요가 있다.”

(4) 費用의 償還

현재에도 경찰관에 의한 代執行 내지는 直接強制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환이 個別法에 규정되어 있다(行政執行法 16조, 道路交通法 31조 등).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충분하기에 그 비용상환에 관한 규정을 體系的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²⁹⁾

29) 자세한 것은 金南辰 II, 255면 이하 참조.

며, 個別法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道路交通法 67조 2항, 公衆衛生法 23조 등). 그러나 警察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直接強制的 必要가 많은 것이므로 警察法에서나마 그에 관한 一般的 規定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立法化에 있어서는 그의 要件·節次·手段에 관해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긴급한 경우에 事前의 戒告(警告)없이 即時로 행할 수 있는 경우(即時強制 또는 即時執行)에 관해서도 明記해 둘 필요가 있다.

現行的 警察官職務執行法에도 “무기의 사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學說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即時強制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立法例에서는 武器의 使用(Schußwaffengebrauch)은 直接強制的 手段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模範答案 제42조), 사정이 急迫하여 사전의 警告없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即時強制(即時執行)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職務執行法上的 경우를 即時強制(即時執行)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職務執行法上的 武器使用에 있어서도, 사전에 “투항하라”등 내용의 警告를 한 다음엔 武器를 사용하는 것이 通例일 것이므로 實際에 있어서는 그 武器使用이 即時強制가 아니라 直接強制的 수단으로서 使用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앞으로의 立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直接強制에는 武器使用만이 아니라 警察이 警察力과 그의 補助手段(警察犬, 警察馬, 물, 자동차 등 기계적 수단, 火藥類)을 통해서 의무자의 신체나 財産에 직접 實力을 가하는 一切의 작용이 이에 포함된다. 사람의 拘留(Fesselung von Pershonen)도 그에 포함된다. 이러한 直接強制는 強制執行 중에서도 가장 強力한 수단이며 따라서 人權侵害의 우려가 많으므로, 그의 要件·節次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²⁸⁾

5. 損害補填·費用償還

(5) 概 說

警察力을 행사하다 보면, 故意·過失로 他人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

28) 독일의 模範草案이 直接強制에 관하여만 13個條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參考가 된다고 하겠다(同法案 제33조-44조).

Ⅲ. 警察執行法試案

第1章 任務 및 總則

第1條(警察의 任務)

- ①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제거함을 임무로 한다.
- ②경찰은 다른 행정기관의 위협방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직무응원을 행한다.
- ③경찰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2條(過剩措置의 禁止)

- ①경찰은 위협방지를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적합성의 원칙)
- ②경찰은 개인 및 사회에 가장 적은 해를 끼치는 수단을 택하여야 한다.(필요성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
- ③경찰은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보다 큰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된다.(상당성의 원칙 또는 협의의 비례원칙)

第3條(裁量의 限界)

- ①경찰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재량을 수권의 목적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며 재량의 법률상의 한계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②개인의 생명 및 신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은 경찰권의 발동의무를 진다.

第4條(行爲責任)

- ①개인이 위협을 일으키거나 일으킬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협발생자에 대하여 위협방지 또는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14세미만자, 금치산자, 정신박약자가 위협을 일으킨 때에는 그들의 보호자에게 위협방지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일을 주문 받은 자가 주문을 받은 일을 하는 도중에 위협을 일으킨 때에는

※ 이하의 내용은 筆者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試案임을 밝혀 두기로 한다.

타인에게 일을 주문한 자에 대해서도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5條(狀態責任)

- ①위험이 물건 또는 물건의 상태에 의하여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권원자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위험이 무주물에 의하여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6條(措置의 直接實施)

- ①법 제4조 및 제5조가 규정한 바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적시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찰을 스스로의 인력과 장비로써 직접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경찰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책임자가 상환의 의무를 진다.
- ③책임자가 제2항에 규정된 비용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第7條(非警察責任者에 대한 義務賦課)

-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찰은 제4조 또는 제5조가 정한 책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위험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1. 현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제4조 또는 제5조가 정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위험방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 3. 경찰 스스로의 조치로도 위험방지와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第2章 警察의 權能

第8條(一般的 權能)

- ①경찰은 개개의 경우에 존재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 또

타인에게 일을 주문한 자에 대해서도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5條(狀態責任)

- ①위험이 물건 또는 물건의 상태에 의하여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권원자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위험이 무주물에 의하여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6條(措置의 直接實施)

- ①법 제4조 및 제5조가 규정한 바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적시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찰을 스스로의 인력과 장비로써 직접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경찰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책임자가 상환의 의무를 진다.
- ③책임자가 제2항에 규정된 비용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第7條(非警察責任者에 대한 義務賦課)

-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찰은 제4조 또는 제5조가 정한 책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위험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1. 현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제4조 또는 제5조가 정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위험방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 3. 경찰 스스로의 조치로도 위험방지와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第2章 警察의 權能

第8條(一般的 權能)

- ①경찰은 개개의 경우에 존재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 또

는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법 제1조 3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은 당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능을 행사한다. 당해 법령이 경찰의 권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은 이 법에 정한 권능을 행사한다.

第9條(身元の 確認 : 不審檢問)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이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경찰관서”라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의 동행이나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④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第10條(鑑識)

①경찰은 제9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지문 및 장문의 채취
2. 사진의 촬영
3. 외견적 신체 특징의 확인
4. 측정

② 제1항의 전제요건이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자는 감식자료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第11條(召喚·出頭命令)

- ①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경찰은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하여 관계자를 소환할 수 있다.
1. 특정인이 특정한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진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감식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소환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1. 진술이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감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소환된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第12條(退去命令)

- ①경찰은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특정한 장소로부터 퇴거시키며 혹은 그 장소에 대한 출입을 금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조치는 소방 기타 구호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명할 수 있다.

第13條(保護措置)

- ①경찰관은 정신착란자, 미아, 주취자, 자살기도자 또는 부상자로서 긴급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 ④경찰관에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

에는 피고보호자를 적당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를 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할수 없다.

第14條(危險發生의 防止)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중요사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15條(犯罪의 豫防과 制止)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범죄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가택에 대한 방법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가택을 방문하여 계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방문이유를 알리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사생활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第16條(危險防止를 위한 出入)

①경찰관은 제14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및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타인의 토지, 건물 또는 선차 내에서 출입할 수 있다.

②홍행장, 여관, 음식점, 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 및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事實의 確認 등)

①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서류,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第18條(留置場)

경찰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第19條(武器의 使用)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구속영장과 압수 및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 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 부터 3회이상의 투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 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4.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를 진압함에 있어 무장간첩이나 소요행위자가 경찰관의 투항명령이나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무기, 폭발물, 화염병이나 도검을 소지하고 계속 항거하거나 무기, 차량, 선박, 항공기를 탈취하거나 공공기관이나 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을 파괴 또는 방화할 때

第20條(保管)

- ①보존된 물건은 보관되지 않으면 안된다.
- ②관계자는 보관의 이유 및 품목을 밝힌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③보관된 물건은 목록을 작성하여 훼손하거나 다른 물건과 섞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으면 안된다.

第21條(換價·廢棄)

- ①물건의 보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기타 보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환가할 수 있다.
- ②환가는 원칙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한다.
- ③보관이나 환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폐기할 수 있다.
- ④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권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환가된 금전 또한 같다.
- ⑤보관 및 폐기에 소요된 비용은 제4조 및 제5조에 정해진 책임자가 부담한다.

第3章 警察強制

第22條(警察強制的 許容)

- ①경찰은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하명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력을 행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경찰강제는 다음의 수단에 의한다.
 - 1. 대집행
 - 2. 과태료의 부과
 - 3. 직접강제
- ③강제수단은 형벌 또는 질서벌과 병과할 수 있다.

第23條(代執行)

- ①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경찰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

第20條(保管)

- ①보존된 물건은 보관되지 않으면 안된다.
- ②관계자는 보관의 이유 및 품목을 밝힌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③보관된 물건은 목록을 작성하여 훼손하거나 다른 물건과 섞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으면 안된다.

第21條(換價·廢棄)

- ①물건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기타 보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환가할 수 있다.
- ②환가는 원칙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한다.
- ③보관이나 환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폐기할 수 있다.
- ④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권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환가된 금전 또한 같다.
- ⑤보관 및 폐기에 소요된 비용은 제4조 및 제5조에 정해진 책임자가 부담한다.

第3章 警察強制

第22條(警察強制的 許容)

- ①경찰은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하명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력을 행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경찰강제는 다음의 수단에 의한다.
 - 1. 대집행
 - 2. 과태료의 부과
 - 3. 직접강제
- ③강제수단은 형벌 또는 질서벌과 병과할 수 있다.

第23條(代執行)

- ①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경찰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

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다.

第24條(間接強制)

①경찰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과태료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까지 되풀이 부과될 수 있다.

③과태료는 ~원으로부터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④과태료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第25條(直接強制)

①경찰은 다른 수단으로 의무를 이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상대방의 신체 및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경찰은 직접강제를 위하여 법 제13조, 제16조, 제19조에 정해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26條(強制手段의 戒告)

①강제수단은 문서로써 계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계고에는 의무이행을 위한 기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

第4章 職務應援

第27條(應援警察官의 派遣)

①직할시 및 도 경찰위원회는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라 한다)의 경비에 있어서 그 소관

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다.

第24條(間接強制)

①경찰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과태료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까지 되풀이 부과될 수 있다.

③과태료는 ~원으로부터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④과태료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第25條(直接強制)

①경찰은 다른 수단으로 의무를 이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상대방의 신체 및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경찰은 직접강제를 위하여 법 제13조, 제16조, 제19조에 정해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26條(強制手段의 戒告)

①강제수단은 문서로써 계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계고에는 의무이행을 위한 기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

第4章 職務應援

第27條(應援警察官의 派遣)

①직할시 및 도 경찰위원회는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라 한다)의 경비에 있어서 그 소관

경찰력으로써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을 받기 위하여 타 경찰위원회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치안처장은 국가치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를 위하여 경찰기동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른 경찰청을 응원하도록 소속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第28條(節次)

- ①직무응원의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②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 문서로 확인한다.

第5章 損害補填

第29條(損害填補의 構成要件)

- ①누구든지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경찰관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30條(補償請求權의 時效)

보상청구권은 보상의 원인을 안 때부터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경찰력으로써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을 받기 위하여 타 경찰위원회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치안처장은 국가치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를 위하여 경찰기동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른 경찰청을 응원하도록 소속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第28條(節次)

①직무응원의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 문서로 확인한다.

第5章 損害補填

第29條(損害填補의 構成要件)

①누구든지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경찰관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30條(補償請求權의 時效)

보상청구권은 보상의 원인을 안 때부터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